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신장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70 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:신장식·정춘생·김선민

김남근 · 김한규 · 황운하

강경숙 · 차규근 · 장종태

김준형 · 김재원 · 박은정

박해철 • 백선희 • 이해민

서왕진 · 김주영 · 한창민

민병덕 · 정태호 · 윤건영

강준현 의원(2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OECD에서 발표한 통계(2022년 기준)에 따르면, 우리나라의 성별임 금격차는 31.2%로 OECD 평균인 11.4%를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.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(2023년 기준)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.3%에 불과함.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직종・직급・직무・근속연수・고용형

태별로 성별임금격차의 실태를 조사·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·완화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7조의10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271호)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272호)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273호) 및 「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273호) 및 「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26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4절에 제17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10(성별임금격차 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직종·직급·직무·근속연수·고용형태별로 성별임금격차의 실태를 조사·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종·직급·직무·근속연수·고용형태별 성별임금격차실태보고서 및 개선 계획을 매년 국회 소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·분석, 개선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. 해당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 <신 설></u> | 제17조의10(성별임금격차 보고서 |
| | 의 제출 및 공표) ① 고용노동 |
| | 부장관은 매년 직종ㆍ직급ㆍ직 |
| | 무・근속연수・고용형태별로 |
| | <u>성별임금격차의 실태를 조사·</u> |
| |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 |
| | 을 수립하여야 한다. |
| |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|
| | 따른 직종・직급・직무・근속 |
| | 연수・고용형태별 성별임금격 |
| | 차 실태보고서 및 개선 계획을 |
| |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|
| | 보고하고, 해당 사항을 공표하 |
| | <u> 여야 한다.</u> |
| |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 |
| | 사·분석, 개선 계획의 수립 등 |
| |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|
| | 로 정한다. |